

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-42호

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다목, 제86조제2항 및 제87조제2항에 의하여 고시한 다량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과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(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9-45호)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0년 9월 17일

우정사업본부장

## 다량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, 감액요건, 감액범위 등 고시

### 1. 우편요금 감액대상

- 우편물의 종류와 중량 및 규격이 같은 우편물로서 1회에 2천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일반우편물 또는 1회에 1천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

### 2. 우편요금 감액요건

#### 가.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

- 1) 직접 배달할 우체국
- 2)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
- 3) 우편집중국

#### 나. 1회 발송 최소우편물 수

- 1) 물량감액 대상 : 1만통 이상
- 2) 구분감액 대상 : 요금별납우편물 2천통 이상 또는 요금후납우편물 1천통 이상
- 3) 환부불필요 우편물 감액 대상
  - o 환부불필요 : 요금별납우편물 2천통 이상 또는 요금후납우편물 1천통 이상

다. 물량 및 구분 감액을 적용을 위한 일반적 요건

1) 우편번호 구분

- 가)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 자리 또는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하여 묶음 또는 용기(우편자루, 상자, 파렛 등)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.
- 나) 1개의 묶음 또는 용기(우편자루·상자)에 들어 있는 우편물은 우편번호가 동일하여야 한다. 다만, 우편번호 앞에서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한 우편물 중 10통 미만의 자투리 물량은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 자리까지 구분하여 묶거나 배달국별로 묶어서 제출할 수 있다.

2) 우편물 제출형태

가) 묶음 제출

- (1) 묶음 1개의 두께는 20cm 이하로 최소 10통 이상이어야 하나, 동일 행선지에 여러 개의 묶음을 보낼 때의 자투리우편물과 10통 묶음이 20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통 이내로 할 수 있다.
- (2) 우편물을 묶을 때에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가로 세로 “+” 형

태 등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.

- (3) 각 묶음에는 정확한 행선지별 우편번호 등을 기재한 표지를 잘 보이도록 앞에 끼워야 한다.

#### 나) 우편자루 제출

- (1) 우편물이 취급 중에 흐트러지지 않게 묶은 후 우편자루에 넣어야 한다.
- (2) 우편자루 1개의 무게는 최소 6kg 이상 최대20kg(우편자루 무게 포함)이하로 한다. 다만, 동일 행선지에 여러 개의 우편자루를 보낼 경우 자투리 우편자루와 1개 우편자루에 우편물수가 1,000통 이상일 때는 6kg 미만으로 할 수 있다.
- (3) 각 우편자루에는 행선지별 우편번호·접수국명을 기재한 「국명표」를 끼워야 한다.

#### 다) 상자(BOX) 제출

- (1) 상자표면에는 상자 속에 들어 있는 우편물의 행선지별 우편번호, 배달국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.
- (2) 상자의 재질은 골판지 등을 사용하여 우편물을 담아 운반시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.
- (3) 동일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크기, 재질 등이 동일한 상자를 사용하여야 한다.

#### 라) 파렛(우정사업본부장 지정 파렛) 제출

- (1) 파렛에는 우편집중국별로 분류하여 적재하여야 하며, 1파렛당

적재량은 총 용적의 최소 50% 이상 최대 100% 이하(파렛 높이 기준)로 한다. 다만, “우편집중국별 파렛 적재”에 의한 구분감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용적이 80% 이상이어야 한다.

- (2) 파렛에 우편물을 적재할 때에는 우편번호순 또는 도착우편집중국별 기계구분계획(sorting plan 순)에 따라 정렬하되, 구분·식별을 할 수 있도록 간지(종이 등)를 삽입(우편번호 정렬 시에는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 자리 단위로 간지 삽입)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형우편물(가로 360mm, 높이 265mm, 두께 20mm 초과)과 띠지, 반봉투를 사용한 우편물은 묶음 처리 후 적재하여야 한다.
- (3) 각 파렛에는 우편번호별 구분 정도(3자리, 6자리) 등을 표시한 국명표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(4) 우편물의 크기와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. 다만, 접수 물량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 경우 크기와 중량이 다른 우편물도 함께 적재할 수 있다.
- (5) 우편물을 파렛 제출 시에는 파렛에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가지런히 적재하여야 한다.

#### 마) 접수목록표 제출

- 우편물의 종류, 구분정도, 묶음 및 용기(파렛·상자·자루)수, 우편물수 등을 기재한 접수목록표를 우편물과 같이 제출하여

야 한다.

- 바) 수취인 주소, 우편번호, 요금인영 등 우편물의 외부기재 사항이 국내 통상우편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, 수취인의 주소는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.

라. 구분 감액률 적용을 위한 제출요건

1) 우편집중국

가)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및 바코드 인쇄

- (1) 「올바른 우편번호사용(바코드인쇄)」 감액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우편집중국에서 인증한 “올바른 우편번호 사용률 인증서”를 우편물과 함께 우편집중국에 제출하여야 하며, 사용률 정도에 따라 감액률을 차등 적용한다.
- (2) 「올바른 우편번호사용(바코드인쇄)」 인증서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6개월
- (3) 1회성으로 발송하는 우편번호바코드인쇄우편물 중 사전 고객 DB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작업에 의한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률을 검사하여 감액률을 차등 적용한다.

※ 올바른 우편번호(집배원별 우편번호)란 주소에 맞는 우편번호를 찾을 때, 우정사업본부가 고시하는 우편번호에서 다량배달처(아파트·빌딩·기관·회사), 번지, 리 단위 및 행정동 또는 법정동 순서로 찾아 가장 먼저 해당하는 우편번호이며, 대표동 우편번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.

나) 우편집중국별 파렛적재

- (1) 1개의 파렛에는 단일 우편집중국에서 처리할 우편물만 적재하여야 한다.
- (2) 동일 발송인은 중량과 규격이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우편물을 동일 파렛에 적재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우편물 종류별 접수물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.
- (3) 묶음 또는 용기(우편자루, 상자)에 담아 파렛 적재할 경우에는 “2. 다. 2) 우편물 제출형태”의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.
- (4) 기타 제출 방법은 우편물 제출 형태의 파렛제출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.

다) 배달국별 구분접수

- (1) 우편번호 앞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한 후 묶거나 상자 등에 담아 그 배달국을 수용하는 우편집중국별 파렛에 적재하되 간지(골판지, 종이 등)를 사용하여 배달국 별로 구분·식별이 쉽게 하여야 한다.
- (2) 1개의 묶음 또는 상자 안에는 단일 배달국에서 처리할 우편물만 있어야 한다.
- (3) 1개의 파렛에 단일 배달국에서 처리할 우편물만 적재할 경우에는 「국명표」에 도착지명을 배달국명으로 표기하여야 한다.

2) 직접 배달국

- 우편번호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하여 묶음 또는 상자 제출 형태의

방법을 준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- 3) “1), 2)”항 해당 우편물은 요금 감액요건 “2. 나. 다.”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충족 되어야 한다.

마. 환부불필요 우편물 감액을 위한 제출요건

- o 환부불필요 우편물 : 우편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의2에 의하여 우편물 표면 좌측 중간에 환부불필요 우편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.

### 3. 우편요금 감액범위(감액률)

가. 물량 감액률

1회 접수물량 (이상)	감액률
10,000통	2%
50,000통	4%
100,000통	6%
200,000통	8%
300,000통	10%

나. 구분 감액률(우편물 접수방법에 따른 감액률)

우편번호 구분정도	접수국별 기준		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및 바코드인쇄			우편 집중국별 파렛적재	배달국별 구분	최고
			85%이상	90%이상	95%이상			
3자리	우편집중국	2%	1%	2%	3%	2%	-	7%
	우편집중국 (배달국 관할)	4%	1%	2%	3%	-	-	7%
6자리	우편집중국	2%	1%	2%	3%	2%	3%	10%
	우편집중국 (배달국 관할)	4%	1%	2%	3%	-	3%	10%
6자리	직접배달국 (자국접수자국배달)	10%	-	-	-	-	-	10%

- 1) ‘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및 바코드인쇄’ 감액률 적용 제외 요건
  - 가) 우편물의 크기가 가로 360mm, 높이 265mm, 두께 20mm를 초과하는 경우
  - 나) 띠지, 반봉투를 사용하는 경우
- 2) ‘배달국별 구분’항목은 ‘집중국별 파렛적재’방식대로 제출된 우편물에 한하여 적용한다.

다. 환부불필요 우편물 감액률 : 일반우편요금의 0.5%

#### 부 칙 <제2010-42호, 2010.9.17>

1. 이 고시는 2010.10.1.부터 시행하며,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9-45호는 폐지한다.
2. 반송정보이용우편물 감액대상(1회 1만통 이상) 및 감액율(일반우편요금의 0.5%)에 대하여는 기존 고객에 한정하여 2011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고시(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9-45호)를 따른다.